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3호 2018. 7. 25.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7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3
- 정선군 공고 제2018-778호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2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7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군도7호(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0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8. ~ 2021.

사업의 종류및명칭 (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군도7호(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읍 직전리	○연장: 1.73km ○폭원: 8.5m ○면적: 45,011m ²	정선군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군도7호선(사북~직전) 도로개설 따른 공사 시행

3.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군도7호(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토목팀)	2018. 7. 20 ~ 2018. 8. 4(15일간)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8. 7. 20. ~ 2018. 8. 4.(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5.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열람 장소 비치(계재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건설과(☎033-560-2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8-778호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동일하게 하고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조문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12조)

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사항 반영(제3조, 제16조)

다. 전우편ID 미 보급 및 근거가 불분명한 조문 삭제

3. 의견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4일까지 정선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1) 전자우편(이메일) : hek9166@korea.kr
- 2)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 3) 팩스 : 033-560-2903
- 4)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자치행정과(전화 : 033-560-24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원도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를 “정선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을 “정선군” 으로, “질높” 을 “질 높”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 을 각각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홈페이지” 라 함은” 을 ““홈페이지”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터넷 민원” 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를 ““전자민원”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로, “민원사 무중” 을 “민원사무 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개인정보” 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비밀번호” 라 함은” 을 ““비밀번호” 란”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인터넷시스템구축및홈페이지운영관리” 를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공한 다” 를 “제공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사이버 민원실” 을 “전자민원창구”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치단체장과” 를 “군수와”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지역주민” 을 “그 밖에 주민” 으로, “알권리” 를 “알 권리” 로, “자치단체장이” 를 “군수가” 로, “정보제공” 을 “정보제공”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 를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를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로 한다.

제4조 중 “시스템운영부서” 를 “시스템 운영부서” 로, “1회이상” 을 “1회 이상”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홈페이지관리부서” 를 “홈페이지 관리부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 를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로, “게시하여 야 하며 정보제공시” 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게시기간을” 을 각각 “게시 기간을” 로, “한 다”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 을 “어느 하나”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게시판” 을 “해당 게시판” 으로, “한 다”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2회이상” 을 “2회 이상” 으로, “내용 을 1일 2회이상” 을 “내용을 1일 2회 이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7조 중 “경 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홈페이지를통한사이버민원실운영” 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을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 민원” 을 “전자민원” 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로,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은” 을 “전자민원창구는” 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 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로, “공개 는” 을 “공개는”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한하 며” 를 “한하며” 로, “처리기간” 을 “처리 기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 을 “전자민원창구” 로, “자치단체장이” 를 “군수가”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개대상민원” 을 “공개대상 민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 정·운영” 을 “지정·운영” 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홈페이지를통한주민참여” 를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이용자 와” 를 “이용자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제13조 중 “홈 페이지” 를 “홈페이지” 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5장 전자우편ID보급” 을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외국어홈페이지운영” 을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홈페이 지” 를 “홈페이지” 로, “홍보효과” 를 “홍보 효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단체장은” 을 “군수는” 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개인정보보호및보안관리” 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여 야” 를 “하여야”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스템운영부서” 를 “시스템 운영부서” 로, “강 구” 를 “강구” 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스템운영부서” 를 “시스템 운영부서” 로, “변동자료 를” 을
“변동자료를” 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u>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u>질높은</u>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인터넷</u>”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u>인터넷시스템</u>”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p><u>정선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정선군</u>----- ----- - <u>질 높</u>----- ----- -----.</p> <p>제2조(정의) ----- <u>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이란</u> ----- ----- ----- ----- -. 2. -----<u>이란</u> ----- ----- ----- ----- -----.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 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사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구축및홈페이지운영
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

3. “홈페이지”란 -----

-----.

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민
원사무 중 -----

-----.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

-----.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1. 2. (생략)
-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 4.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 5. 전자우편 ID 이용
- 6. (생략)
-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

----- 제공한다.

②-----
-----.

- 1. 2. (현행과 같음)
- 3. 전자민원창구 ---
- 4. 군수와-----

--

<삭 제>

- 6. (현행과 같음)
- 7. 그 밖에 주민-----
알 권리 ----- 군수가

정보제공 --

③-----
-----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 한다.

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

④-----
----- 인터
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
템 운영부서-----
----- 1회 이상 --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
페이지 관리부서-----

-----.

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

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 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 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 다.

1. ~ 7. (생략)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 게시 기간을 -----
----- 게시
기간을 ----- 한다.

②-----

----- 어느 하나-----
-----.
----- 해당 게시판-----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 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통한사이버민원실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 2회 이상 -----
- 내용을 1일 2회 이상 -----

9. 그 밖의 -----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

-----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단서 삭제>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전자민원-----
-----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②전자민원창구는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
리 공개 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
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
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
에 한하 며 민원의 종류, 민원
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
다.

②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자치단체장
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
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
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
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사이
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 공개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 한하며 -
----- 처
리 기간 -----
-----.

②전자민원창구-----

----- 군수가 -----
-----.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공개대상 민원-----
-----.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
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
야 한다.-----
-----.

다.

③·④ (생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 지정·운영-----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 이용자와 --

-----.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ID보급

제5장 전자우편ID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홈페이지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국외에 자치

----- 홈페이지-----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자치단체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및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 홈
페이지----- 홍보
효과-----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

--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 하여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
템 운영부서-----
----- 강구
-----.

② 시스템 운영부서-----

----- 변동자료를 --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
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
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
신보안관 련규정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삭 제>

관계법령 발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를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